TPP 주요국 투자 · 서비스 장벽 분석: 기체결 협정문 및 양허분석을 중심으로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지역통상팀 부연구위원
kim.jd@kiep.go.kr

강준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전문연구원
jgkang@kiep.go.kr

이주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다자통상팀 연구원
jmlee@kiep.go.kr

엄준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다자통상팀 연구원
jheom@kiep.go.kr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WTO DDA 협상의 부진과 함께 2000년대 후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메가 FTA 협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짐.
  - WTO 체제하에서 2000년 이후 통상 관련 논의는 실질적으로 진전을 보는 데 실패하였으며, 2014년 말 타결된 무역원활화 협정이 WTO 논의 활성화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움.
  - 미국은 1995년 NAFTA를 기점으로 FTA를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현재 유럽과의 TTIP, 그리고 일본, 동남아 및 남미 국가들과 함께 TPP 논의를 빠르게 진전시켜나가고 있음.
  -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RCEP의 발달 등 현재 메가 FTA가 나타나고 있음.

- 한국은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다양한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메가 FTA로는 RCEP 협상에 참여 중이고, 미국이 이끄는 TPP 협상 참여를 검토하고 있음.
  -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은 다양한 국가와 양자간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2014년 말 현재 48개국과 FTA를 체결하였음.
  - 2000년대 후반 이후 전 세계 통상의 흐름이 지역의 범위를 넘어 다수의 다양한 국가간의 서비스 및 투자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메가 FTA가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은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고민하고 있음.

- 본 연구는 미국 주도의 TPP 협상에 있어 서비스 및 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양허협상 전략을 고민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미국은 현재 EU와의 FTA인 TTIP가 진행 중이며, 일본을 포함하고 있는 TPP를 중심으로 상품을 넘어 서비스, 투자 및 통상 규범 전반에 있어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함.
  - 본 연구에서는 FTA의 여러 분야 중 서비스 및 투자에 있어 TPP 협상국들의 기체결 협정에서 나타난 개방수준을 파악하고, 향후 TPP의 영향과 한국의 양허전략을 검토해보고자 함.
  - 최근 서비스·투자 분야의 주요 조항별 이슈를 검토하였으며, 전반적인 서비스 개방수준을 알려주는 DDA 수정양허안을 분석하고, 이어 포괄주의 방식의 유보목록을 검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14년도에 OECD에서 발표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 바탕으로 TPP 협상국의 개방수준을 분석함.

2. 조사 및 분석 결과

가. 주요 조항별 쟁점 분석

- 분석의 대상이 된 주요 조항은 최혜국(MFN: most-favoured nation)대우, 내국민대우(NT: national treatment), 시장접근(MA: market access), 현지주재(LP: local presence), 이행요건(PR: performance requirement) 5가지임.
  - 서비스 · 투자 장벽은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협정문에 제시된 문안(법) 자체로 장벽이 될 수 있는바, 협정 및 양허 분석의 출발점은 협정문 분석임.

- MFN 조항은 ① 분쟁해결절차에의 적용여부 ② 불리한 대우에 대한 판단 시 비교대상 ③ 미래 MFN (forward MFN) ④ 동종성(likeness) ⑤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의 구별 ⑥ 최혜국 대우 부여조건의 여섯 가지 구성 요소에 대해 이슈가 있음.
  - GATS에서는 최혜국 대우의 적용범위에 대해 협정의 대상이 되는 '모든 조치'라고 하였으나,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 investor-state dispute)의 경우 MFN의 적용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며, 한 · 미 그리고 한 · EU FTA를 근거로 판단할 경우 '모든 조치'의 범주에 분쟁해결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미국 주도 협상인 TPP에서도 분쟁해결절차에 MFN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 불리한 대우에 대한 판단의 비교대상과 관련하여 'GATS에서는 회원국(Member)'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회원국이 비회원국에 부여한 비교대상이며, NAFTA의 경우 다른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모두를 비교 대상으로 판단
  - 미래 MFN의 경우 적용시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TPP에서는 한 · 미 FTA에서와 같이 협정 본문에서 시간적 효력을 규정하지 않지만 부속서 II에서 제한을 두고 있으며, 기준시점으로 발효 또는 체결을 지정하고 있음에 유의(예: 한 · 미 및 한 · EU 최혜국 대우 기준시점에 따라 아래의 그림과 같이 한 · 미 FTA의 혜택이 EU에 부여되지 아니함.)

그림 1. 최혜국대우 조항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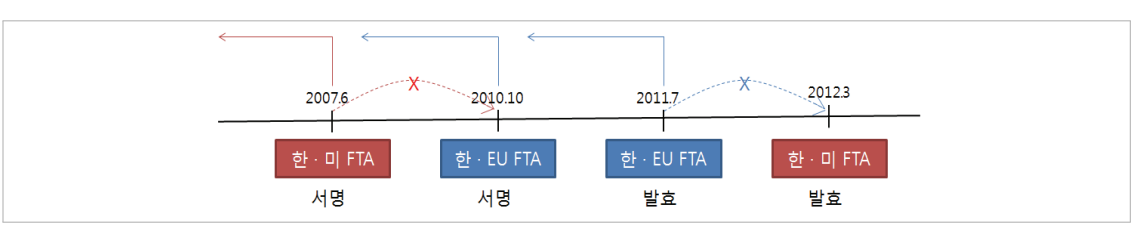

주: 1. 한 · 미 FTA에서의 미래 MFN 적용 기준: 한 · 미 FTA 발효 이후에 서명 또는 발효된 FTA.
2. 한 · EU FTA에서의 미래 MFN 기준점: 한 · EU FTA 발효 이후에 서명된 FTA.
자료: 협정문을 기초로 저자 정리.

- 협정 가입국 중 한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또 다른 당사국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GATS 협정에서는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성 판단이 중요하며, 한 · 미 FTA에서는 동종성 문안이 등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분쟁 시 정확한 동종성 판단은 사실상 어려움.
-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의 구별은 학계에서도 논란이 있으나, 한 · 미 FTA에서는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규정 문안만 존재하므로, TPP에서도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문안만을 고려할 것으로 판단
- GATS 문안에 따르면 최혜국 대우는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되어야 하는데, 이 중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며, NAFTA 협정이나 한 · 미 FTA에서는 '무조건적'이라는 표현이 없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판례상으로도 무조건적의 의미는 '동종 서비스에서의 회원국간 비차별'이라는 취지로 해석됨.

- 최혜국 대우와 같이 비차별 조치(non-discriminatory measures)인 내국민대우(NT: national treatment)와 관련하여 ①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의 분리 ② 동종상황(like circumstances) ③ 지역정부(regional level of government) 세 가지 쟁점을 점검하였음.
  -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의 구별은 MFN에서와 마찬가지로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국경간 거래 부분 장(chapter)에서 서비스에 대한 규정이 없는 반면, 투자 부분 장(chapter)에서는 투자와 투자자가 모두 규정되어 있는 것과 비교됨.
  - '동종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like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라는 문안은 GATS의 문안으로 NAFTA 방식의 협정에서는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동종상황(like circumstances)' 문안이 사용되고 있으나, NAFTA 분쟁사례 등에서는 두 개념이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이해되고 있음.
  - 지역정부(regional level of government)는 미국의 경우 주정부를 의미하며, 한 · 미 FTA에서 가장 높은 개방도를 보인 미국은 주정부 '내주민대우' 조치에 대해 협정마다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TPP 협상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시장접근(MA: market access)은 다른 협상 대상국에 시장을 개방한다는 의미가 있어 중요하지만, 이미 GATS에서의 내용이 매우 안정적이고 NAFTA 방식의 협정과 매우 유사하므로 TPP에서 시장접근과 관련된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함.

- 현지주재(LP: local presence) 부과 금지의무는 국경간 거래에 있어 시장접근 관련 제한사항으로 현지주재의 범위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음.
  - GATS에 비하여 NAFTA나 한 · 미 FTA가 법인뿐만 아니라 자연인에 대한 현지주재 부과 금지 의무를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TPP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따를 것으로 판단

- 다만 미국, 호주 등 여타 선진국이 참여하고 있는 지역무역협정에서 거주(resident)뿐만 아니라 주소지(domiciled)를 두는 것에 대해서도 금지의무로 규정하고 있어 주의를 요함.

- 이행요건(PR: performance requirement) 부과 금지의무는 지적재산권이 강조되고 있고, 글로벌 가치사슬 발달과 관련된 새로운 문안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함.
  - 이행요건 관련사항은 한 · 미 FTA에서 WTO TRIMS나 NAFTA보다 발전된 형태의 모습을 보임.
  - TRIMS와 비교하여 '기술이전', '특정 지역으로의 독점공급'이라는 두 가지 유형이 추가되어 총 7가지의 유형이 규율됨.
  - 한 · 미 FTA와 NAFTA의 가장 큰 구별점은 투자유치를 위해 부여한 혜택의 반대급부로 지식재산권 이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한 이행요건 부과 금지의무 위반이 아닌 것으로 규정한다는 것임.
  - 특별히 이행요건 부과 금지의무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발달로 인한 해외투자 증가와 해외 부품 조달의 원활화 등을 고려했을 때 매우 중요한 의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TPP 협상의 전개내용에 대해 각별히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음.

나. TPP 참여국의 DDA 서비스 양허수준 분석

- 본 연구는 TPP 협상 참여국이 2005년 제출한 DDA 서비스 수정 양허안을 토대로 서비스 분야의 양허 내용 및 개방수준을 분석
  - TPP 참여 12개국 중 DDA 수정양허를 제출하지 않은 브루나이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베트남의 경우 2007년 WTO 가입당시 제출 양허표 기준으로 분석
  - 서비스 공급형태 중 국경간 공급(모드 1), 해외소비(모드 2), 상업적 주재(모드 3)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수평적 제한사항인 자연인의 이동(모드 4)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
  - UN Provisional CPC에 기초한 서비스 분류체계는 크게 총 12개 부문(sector)으로, 사업서비스 46개, 커뮤니케이션서비스 24개,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이하, 건설서비스) 5개, 유통서비스 5개, 교육서비스 5개, 환경서비스 4개, 금융서비스 17개, 보건 관련 및 사회서비스(이하, 보건 · 사회서비스) 4개,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이하, 관광서비스) 4개, 오락, 문화 및 스포츠서비스(이하, 오락 · 문화 · 스포츠서비스) 5개, 운송서비스 35개, 기타서비스 1개로 총 155개의 업종(subsector)이 분석 대상임.
  - TPP 참여국의 서비스교역 개방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DDA 서비스 수정양허안의 내용을 검토하여 제한 없음(none)의 경우 1로, 개방 안 함(unbound)의 경우 0으로, 부분적인 제한이 있는 경우 0.5를 부여하는 Hoekman(1995)의 방식 사용

- Hoekman 가중치를 이용한 시장접근 개방수준을 분석 결과, TPP 참여국 전반에 걸쳐 커뮤니케이션, 건설, 유통, 관광 서비스 등이 개방도가 높은 업종으로 나타났으며, 교육, 보건 · 사회, 오락 · 문화 · 스포츠, 운송서비스 등은 개방도가 낮은 업종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건설서비스는 대다수의 나라에서 완전 개방에 가까운 개방을 보임.
  - 미국, 일본, 뉴질랜드의 경우 전 업종에 걸쳐 개방도가 높음.
  - 반면 캐나다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방이 미흡한 업종이 많음.
  - 중남미 참여국인 칠레 및 페루의 경우 모드별 개방 수준과 마찬가지로 업종별 개방 수준도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특히 칠레는 개방도가 0인 업종이 11개 부문 중 5개를 차지해 업종별 개방도가 상당히 낮은 국가로 분석됨.
  - ASEAN 참여국 중에서는 싱가포르와 베트남의 업종별 개방 정도는 높은 편이나, 말레이시아의 개방 정도는 다소 낮은 편으로 분석
  - 업종별로는 참여국 전반에 걸쳐 건설, 유통, 관광서비스를 중심으로 개방 수준이 높았으나, 보건 · 사회서비스는 개방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여타 TPP 참여국들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유통 및 관광서비스의 개방 수준이 높은 업종으로 나타났으나, 보건 · 사회서비스는 개방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표 1. 시장접근 부문 서비스 업종별 개방 정도

(단위: %)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한국
사업	73.75	65.42	63.17	84.53	56.69	60.78	42.51	51.45	64.75	34.33	46.91	72.5
커뮤니케이션	84.63	66.45	77.93	71.57	95.58	23.26	44.56	24.31	35.98	**66.55**	46.9	69.55
건설	**100**	**100**	**100**	**100**	**100**	42.86	0	0	**100**	50	50	50
유통	82.29	75.84	68.8	97.83	62.65	62.17	0	**82.76**	60.9	0	**78.37**	64.59
교육	55.95	62.86	0	45.24	80.95	51.43	0	0	19.05	21.43	60	33.33
환경	**100**	90.63	**100**	90.63	**100**	14.06	0	0	12.5	0	42.97	78.13
금융	46.78	78.87	46.78	50	81.07	28.97	23.96	37.1	47.4	43.47	51.69	29.16
보건 · 사회	18.91	18.91	0	48.94	0	61.23	0	0	56.5	18.91	18.91	0
관광	94.92	**100**	58.03	**100**	**100**	55.57	**100**	58.03	96.07	54.1	54.1	**100**
오락 · 문화 · 스포츠	90.1	80.2	0	42.57	0	**80.2**	0	24.75	17.82	34.65	34.65	19.8
운송	36.36	34.85	40.68	44.38	54.83	24.66	3.24	18.59	11.25	5.63	26.32	29.6

주: 1. 개방 정도가 60% 이상인 업종을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2. 각국별 개방 정도가 가장 높은 업종과 가장 낮은 업종을 진한 글씨로 표시하였다.
자료: WTO DDA 수정양허안 분석을 토대로 저자 작성.

- 내국민대우 부문의 개방 수준은 시장접근에 비해 업종 전반에 걸쳐 다소 높은 경향을 보임.
  - 미국, 일본, 뉴질랜드의 경우 시장접근과 동일하게 개방 수준이 높은 업종이 많은 나라로 분석되었으며, 캐나다와 호주의 내국민대우 부문 업종별 개방도는 시장접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칠레와 페루의 업종별 개방 수준은 시장접근과 마찬가지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관광서비스의 개방 수준은 높음.
  - 싱가포르와 베트남도 시장접근보다 다소 높은 업종별 개방 수준을 보였으며, 말레이시아도 시장접근에 비해 내국민대우의 업종별 개방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참여국 대부분에서 커뮤니케이션, 유통, 관광서비스에 대한 개방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보건 · 사회서비스에 대한 개방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경우 내국민대우 부문에서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높은 개방 수준을 보여주었는데, 커뮤니케이션, 건설, 유통, 관광서비스의 경우 완전 개방에 가까운 개방을 보인 업종으로 나타났으나, 보건 · 사회 및 오락 · 문화 · 스포츠서비스의 경우 개방 수준이 낮은 업종으로 나타남.

표 2. 내국민대우 부문 서비스 업종별 개방 정도

(단위: %)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한국
사업	78.09	71.36	65.87	85.33	55.69	62.77	42.81	49.3	69.14	45.91	47.7	78.49
커뮤니케이션	84.66	66.45	77.93	85.07	68.58	38.77	70.22	48.61	69.69	91.95	93.11	93.85
건설	**100**	100	75	**100**	**100**	42.86	**0**	**0**	**100**	50	50	**100**
유통	**100**	75.84	93.89	**100**	62.65	62.17	**0**	82.76	60.9	**0**	87.92	**100**
교육	**30.95**	92.38	**0**	**14.76**	80.95	51.43	**0**	**0**	19.05	**0**	39.76	20.24
환경	**100**	90.63	**100**	90.63	100	**14.06**	**0**	**0**	12.5	**0**	85.94	85.94
금융	66.56	67.81	61.02	56.46	84.24	57.22	47.47	64.9	66.82	66.34	52.07	56.96
보건 · 사회	32.15	**18.91**	**0**	48.94	**0**	61.23	**0**	**0**	56.5	18.91	**34.04**	**0**
관광	**100**	**100**	54.1	**100**	**100**	**100**	**100**	**97.38**	92.13	**97.38**	**93.44**	**100**
오락 · 문화 · 스포츠	**100**	80.2	**0**	42.57	**0**	80.2	**0**	29.7	17.82	49.5	49.5	9.9
운송	39.09	40.74	56.93	48.92	54.83	24.66	3.24	18.2	**11.25**	9.2	34.7	31.88

주: 1. 개방 정도가 60% 이상인 업종을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2. 각국별 개방 정도가 가장 높은 업종과 가장 낮은 업종을 진한 글씨로 표시하였다.
자료: WTO DDA 수정양허안 분석을 토대로 저자 작성.

- 주요 서비스 업종 및 특징적인 양상을 보인 업종에 대해 TPP 참여국과 한국의 업종별 개방도를 비교 분석하였음.
  - 사업서비스는 서비스 부문에서 중상의 개방 수준을 보인 업종으로, TPP 참여국 중 사업서비스에

대한 개방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호주,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과 같은 고소득 국가 위주로 분석되었으며, 말레이시아, 칠레, 베트남, 페루 등과 같이 저소득 국가의 개방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

- 커뮤니케이션서비스의 경우 사업서비스와 같이 뚜렷한 특징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고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개방에 적극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흥미로운 사실은 서비스 개방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말레이시아가 커뮤니케이션서비스에서는 높은 개방 수준을 보임. 한국의 경우 시장접근에 비해 내국민대우의 개방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건설서비스의 경우 여타 서비스와 달리 개방에 대한 나라별 입장이 극명한 업종으로 분석. 건설서비스 역시 고소득 국가들은 매우 개방적이나, 칠레, 페루와 같은 저소득 국가들은 보수적임. 한편 멕시코, 말레이시아, 베트남은 동 부문 개방에 중간적인 입장을 취함.
- 유통서비스에 대한 개방이 TPP 참여국 전반에 걸쳐 상당히 높음. 고소득 국가뿐만 아니라 멕시코, 페루, 베트남도 유통서비스에 대해 높은 개방 수준을 보였으며, 페루와 멕시코는 일본보다 더 개방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그러나 칠레와 말레이시아는 유통서비스에 있어서도 여전히 개방이 미진한 국가들로 분석되어 협상 시 개방 압력에 놓일 것으로 예상. 한국의 유통서비스 분야 개방 수준은 높은 편이나 시장접근 부문에서 다소 미흡.
- 금융서비스의 경우 대부분의 참여국이 개방에 중도적인 입장임. 아울러 참여국들은 시장접근보다 내국민대우에 대한 개방 수준이 더 높은 경향을 보임. 참여국 중 뉴질랜드와 일본 정도만 금융서비스에 대한 개방 수준이 높은 편으로 분석되었으며, 미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캐나다, 호주, 베트남 등의 개방 수준은 중간 수준이며, 중남미 참여국은 금융서비스 개방에 있어서도 여타 참여국에 비해 미진한 개방 수준을 보였으나 이에 반해 ASEAN 참여국은 전반적으로 높은 개방 수준을 보임. 한국의 경우 금융서비스 분야의 개방 수준은 다소 낮은 편으로 멕시코와 비슷한 수준으로 분석
- 오락 · 문화 · 스포츠서비스는 미국, 일본, 멕시코를 제외하고 나머지 참여국들은 개방이 미흡함. 대부분의 서비스 업종에서 높은 개방 수준을 보인 캐나다, 뉴질랜드, 싱가포르의 오락 · 문화 · 스포츠서비스 부문의 개방 수준은 여타 업종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말레이시아나 베트남의 개방 수준보다 더 낮음.
- 운송서비스는 사업서비스와 반대로 TPP 참여국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개방 수준을 보인 보수적 업종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개방 수준이 비교적 높았으나, 여타 업종과 비교하면 이 정도의 개방 수준은 높은 편은 아니며, 전 업종에 걸쳐 개방 수준이 높은 편인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운송서비스는 낮은 수준임. 칠레, 말레이시아, 페루 등도 운송서비스 개방에 보수적임.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여타 업종에 비해 운송서비스 개방에 보수적인 성향을 띄면서 베트남보다도 낮은 개방 수준을 보임. 한국도 운송서비스 개방에 보수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TPP 참여국 중에는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것으로 분석

그림 2. TPP 참여국별 각 서비스의 개방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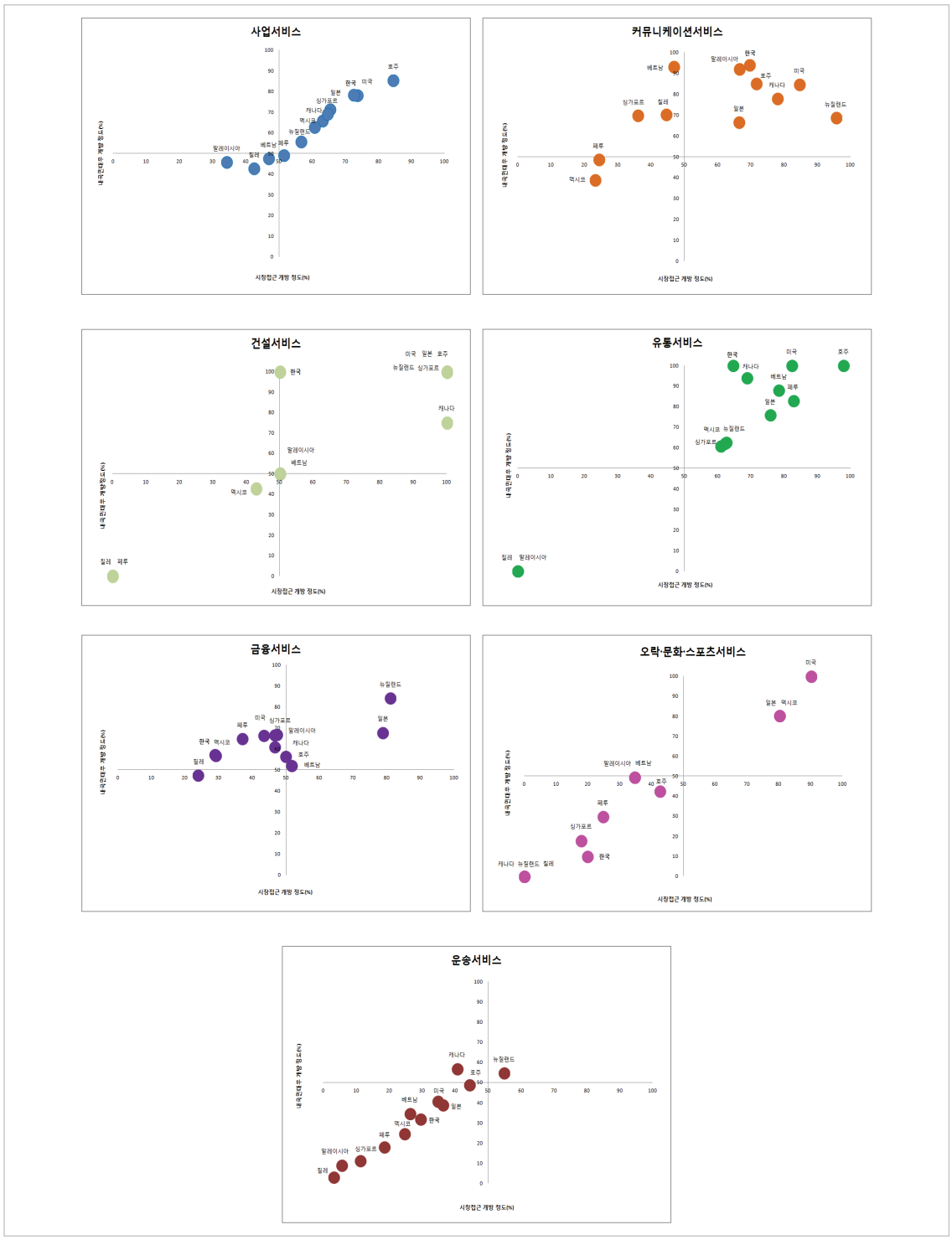

자료: WTO DDA 수정양허안 분석을 토대로 저자 작성.

다. TPP 참여국의 서비스 유보목록 분석

- 본 연구는 TPP 협상 참여국 중 포괄주의(negative list) 방식으로 체결한 협정의 유보목록을 분석함.
  - 포괄주의 방식인 NAFTA 형태의 협정에서는 서비스 분야별 제한사항이 양허표에 기재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협정의 주요 조항에 비합치하는 각국의 조치가 현재유보(Annex I)와 미래유보(Annex II)에 각각 기재. 여기에서 유보목록에 포함되는 비합치조치는 서비스 협정의 최혜국(MFN)대우 조항, 내국민대우(NT) 조항, 시장접근(MA) 조항, 현지주재(LP) 조항과 관련된 것이 일반적이며, 그 외에도 투자 협정의 최혜국(MFN)대우 조항, 내국민대우(NT) 조항,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SMBD) 조항, 이행요건(PR) 조항과 관련된 비합치 조치도 유보목록에 같이 기재
  - 일반적으로 포괄주의 방식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 주로 사용되며, 따라서 TPP 회원국 중 포괄주의 방식 협정에 익숙한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를 중심으로 분석

- 미 · 호주 FTA와 한 · 미 FTA 유보목록 분석 결과 미국 입장에서 민감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분야에만 제한 조치를 두고 있어 전반적으로 미국의 서비스 자유화 수준이 높다고 판단
  - 미국의 유보목록으로 판단할 때 미국의 주요 민감 분야는 커뮤니케이션서비스, 해운서비스, 항공운송서비스, 광업 · 파이프라인 운송 등이며, 그 외의 소수집단 보호 조치, 사회서비스 미래유보 조치,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제한 조치, 항공 · 수산 · 해상사안 MFN 대우 조치 등은 여타 국가에서도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유보 사항임.
  - 미 · 호주 FTA에서 미국은 현재유보에 총 12가지의 목록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래유보에는 총 7가지의 목록을 포함. 현재유보에서는 원자력에너지(원자력 이용), 사업서비스(수출무역회사 심사인증서), 사업서비스(특정 품목 수출 · 재수출), 광업 및 파이프라인 운송, 모든 분야(해외민간투자공사 보험 및 대출 보증), 항공운송(국내선 운항), 특수항공서비스, 관세사, 모든 분야(주식 공모 및 증권 등록), 무선통신(무선 허가 제한), 특허관련 업무, 모든 분야(지역 비합치 조치)의 유보사항을 포함. 미 · 호주 FTA에서 미국의 현재유보 총 12가지 목록 모두는 한 · 미 FTA에서도 그대로 유지
  - 미 · 호주 FTA에서 미국은 미래유보에 총 7가지 목록을 포함하고 있는데, 커뮤니케이션서비스(DTH, DBS TV 서비스 및 디지털오디오서비스 관련 MFN 조치), 케이블 TV, 사회서비스, 소수집단, 해상운송(해상운송서비스 제공 및 미국 국적기 선박), 모든 분야(시장접근 포괄유보), 모든 분야(항공, 수산, 해난구조 포함 해상사안의 MFN 조치)를 유보. 미 · 호주 FTA에서 미국의 미래유보 7가지 중 케이블TV에 대한 유보 내용은 한 · 미 FTA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6가지 유보 내용은 그대로 포함

- 일본은 포괄주의 방식 FTA를 체결하고 있으나 NAFTA 방식을 모두 받아들이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특징이 있음.
  - 일본은 2005년 멕시코와 처음으로 NAFTA 형태의 서비스 · 투자 협정을 체결한 후 칠레(2007년 발효), 스위스(2009년 발효), 페루(2012년 발효)와 NAFTA 형태의 서비스 협정을 체결
  - 일본의 기체결 NAFTA 형태의 협정을 살펴보면 협정에 따라 역진방지 조항과 시장접근 조항, 내국민 대우 조항이 선별적 · 제한적으로 포함되고 있으나, 모든 협정에서 최혜국대우 조항은 포함
  -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 NAFTA 방식으로 체결된 일 · 페루 FTA와 일 · 칠레 FTA를 중심으로 분석
  - 일본의 유보목록 건수를 살펴보면 일본 · 칠레 EPA에서 현재유보가 48건, 미래유보가 12건이었으나 일본 · 페루 EPA에서는 현재유보가 41건으로 다소 감소한 반면 미래유보는 20건으로 일본 · 칠레 EPA보다 많이 증가
  - 일본은 사업서비스, 전문직서비스, 부동산, 건설, 사회서비스, 금융, 운송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사무소 설립 등과 같은 현지주재를 요구하는 조치, 그리고 승인을 취득할 것을 요구하는 조치가 현재유보에 많이 포함
  - 미래유보의 내용을 보면 일본 · 칠레 EPA 체결 당시 여타 국가에서도 정책 주권 사항으로 간주하는 내용[1]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외에 텔레그래프 · 우편 · 도박 · 담배생산 · 화폐제조판매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 제한(지정기업 또는 정부기관), 방송산업, 경비서비스 분야를 미래유보함. 특징적인 것은 일본은 협정 발효일 이후에 등장하는 새로운 서비스(New Services)와 관련된 조치를 채택 또는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을 미래유보에 포함
  - 일본 · 페루 EPA에서는 일본 · 칠레 EPA의 미래유보 중 토지거래 관련 내용만 제외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여기에 R&D 보조금 관련 조치, 노동자파견서비스, 초중등교육서비스, 원자력에너지관련 기계 수리, 전력송전 관련 서비스, 특정 방사성폐기물 최종처리서비스, 수수료 · 계약에 기반한 천연가스 운송, 은행 및 기타금융서비스의 Mode 1, 보험서비스의 Mode 1, 2가 신규로 포함

- 호주는 DDA 수정 양허안 개방 수준이 상당히 높으며 포괄주의 방식의 협정은 미국과의 협정 문안을 대부분 수용
  - 호주는 2005년 미국과 FTA를 체결한 이후 태국(2005년 발효), 칠레(2009년 발효), ASEAN · 뉴질랜드(2010년 발효), 말레이시아(2013년 발효)와 FTA를 체결 · 발효하였으나, NAFTA 방식의 서비스 · 투자 협정을 체결한 것은 미국과의 FTA와 칠레와의 FTA뿐임.
  - 전술한 미국의 주요 조항과 마찬가지로 미 · 호주 FTA의 경우 역진방지 조항, 최혜국대우 조항(미

1) 여기에 해당하는 일본의 미래유보는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일본 정부 · 국영기업의 주식 · 자산 이전 · 처분 관련사항, 항공우주산업, 무기 · 폭발물, 전력 · 가스 · 원자력에너지, 연안해 · 내수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업, 토지거래, 공공법집행 · 교정 · 사회서비스임.

래 MFN 포함), 시장접근 조항, 내국민대우 조항, LP 조항, PR 조항, SMBD 조항 모두를 포함. 호주가 칠레와 체결한 FTA도 국경간 서비스 무역 챕터 및 투자 챕터에서 미 · 호주 FTA 협정문과 거의 동일한 제 조항을 포함

- 호주는 미국과 체결한 FTA에서 현재유보 목록을 총 17개 포함하고 미래유보 목록을 총 12개 포함하며, 현재유보에서 지방정부의 현존 비합치조치를 모두 유보

◎ 캐나다는 NAFTA 경험으로 포괄주의 방식에 익숙한 것으로 보이며 개방 수준은 미국, 호주 등 기타 선진국에 비해 높다고 보기 어려움.

- 캐나다는 1989년 미국과의 FTA를 시작으로 1990년대에 NAFTA(1994년), 캐나다 · 이스라엘 FTA(1997년), 캐나다 · 칠레 FTA(1997년)를 체결 · 발효. 2000년대에 들어서는 2002년 코스타리카와의 FTA가 발효된 후 2008년까지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않았으나, 2009년부터 EFTA(2009년), 페루(2009년), 콜롬비아(2011년), 요르단(2012년), 파나마(2013년)와의 FTA가 체결 · 발효
- 본 연구에서는 2009년에 발효된 캐나다 · 페루 FTA와 2014년에 타결된 한 · 캐나다 FTA의 유보목록을 비교
- 캐나다가 페루 및 우리나라와 체결한 FTA에서 유보목록의 수를 살펴보면 캐나다 · 페루 FTA는 현재유보가 27건, 미래유보가 16건이며, 한 · 캐나다 FTA의 경우 현재유보는 27건으로 동일하고 미래유보가 13건으로 3건 감소
- 캐나다의 유보 내용상 특징을 살펴보면 다른 국가의 유보 내용에 비해 투자 관련 조치에 있어서는 투자의 심사, 지분 제한, 이행요건 부과 등이 많고, 국경간 서비스 무역과 관련된 조치로는 국적요건(영주권자 · 시민권자 요구)과 LP 요건(거주요건 또는 캐나다 내 사무소 · 법인 설립)을 부과하는 조치가 많음.
- 유보목록을 통해 서비스 ·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분야를 보면 현재유보의 경우 사업서비스(관세사, 면세점, 문화재 수출입 관련 서비스, 특허대리인, 상표대리인, 금융서비스 감사)와 에너지서비스(석유 · 가스, 우라늄), 어업(생선의 수확 · 가공), 항공운송(항공사업자, 항공기 · 항공제품 수리 · 정비 · 유지보수), 육상운송(트럭 · 버스 서비스), 수상운송(선박등록, 선장 · 항해사 · 기술자 · 선원, 수로안내, 수상운송상 해운동맹 등), 통신서비스(기간통신사업자 등)가 중심이 되며, 미래유보의 경우 일반적인 유보 사항(원주민 관련 사항, 어업서비스, 정부재정, 소수집단, 사회서비스 등) 외에 통신서비스, 항공운송, 수상운송(연안해상운송) 등에서 정책 주권을 확보

라. 서비스무역제한지수 분석

◎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는 서비스 무역에 대한 장벽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를 위해 만들어짐.

- 각국 정부나 연구기관들이 서비스장벽 계량화에 관심을 보여왔음.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에서도 서비스장벽 계량화에 관심을 보여왔으며, 실질적으로 서비스무역제한지수 개발을 시작
- OECD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 작업은 2007년 6월 무역위원회에서 개별 서비스 산업별 수준에서의 무역장벽을 계량화하기 위해 시작. 몇 년에 걸친 작업으로 2014년 5월 OECD는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를 40개국 18개 분야에 대해 발표
- 상대적으로 객관적인고 종합적인 서비스 분야 개방 지수라는 점에서 TPP 협상에서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

● 본 절에서는 주요 TPP 참여국과 한국의 서비스 분야 개방수준을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를 기준으로 OECD 국가 평균과 비교 검토

- 서비스무역제한지수는 복합지수(composite index)로, 다섯 가지 기본 범주(category)하에서 개별 제한사항에 대해 '0'과 '1'로 수치화하였으며, 각 개별 제한 사항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서비스 분야별 지수를 도출
- 비교대상 국가는 TPP 참여국 중 OECD STRI가 제시되어 있는 7개국임.
- 또한 비교대상 서비스 분야 역시 서비스무역제한지수가 제공되고 있는 18개 분야에 한정
- OECD 국가평균은 OECD 34개 회원국 분야별 서비스무역제한지수의 단순평균

표 3. W120 기준으로 표시된 STRI 18개 분야

사업서비스	A. 전문직 서비스	a. 법률 b. 회계 d. 건축 e. 엔지니어링
	B. 컴퓨터 관련 서비스	
2. 커뮤니케이션서비스	B. 쿠리어 서비스	
	C. 통신 서비스	
	D. 시청각 서비스	a. 영화 c. 방송 e. 음향
3. 건설서비스		
4. 유통서비스		
7. 금융서비스	A. 보험	
	B. 은행	
11. 운송서비스	A. 해상운송	
	C. 항공운송	
	E. 철도운송	
	F. 도로운송	

출처: OECD STRI Policy Brief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서비스 분야별 개방수준 비교.

- 사업서비스의 전문직 서비스 중에서 법률, 회계, 건축, 엔지니어링 서비스 분야 서비스무역제한지수가 국가별로 비교분석되었으며, 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 통해 본 전문직 서비스 개방수준은 해운서비스나 항공서비스를 제외한 다른 서비스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이는 전문직 서비스가 인력의 이동을 수반하며, 이들 인력에 대해 국가별로 서비스 공급자의 자격(qualification)이나 면허(license)의 문제가 있기 때문. TPP 참여와 관련하여 한국의 전문직 서비스는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방수준이 낮아, TPP에 직접 참여할 경우 이미 참여하고 있는 TPP 회원국으로부터 개방에 대한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
- 커뮤니케이션서비스는 우편, 배달(쿠리어), 통신, 시청각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분야임. 동시에 정부가 독점권을 인정하거나(우편), 국가 기간산업으로 보호하거나(통신), 문화적 이유로 보호(시청각)하고 있어 제한사항이 많고 자유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 한국의 경우 영화 분야를 제외하고는 OECD 평균보다 높은 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 보이고 있어 개방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지만, 제시되어 있는 TPP 협상 참여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낮은 개방수준을 보이는 분야는 없는 것으로 판단
- TPP 협상 참여국의 전반적인 건설서비스 개방수준은 높음. 건설 분야 서비스무역제한지수는 OECD 회원국 평균 0.146이며, 대부분의 TPP 협상 참여국은 이와 비슷한 수준임. 서비스무역제한지수의 최대개방국인 일본과 최소개방국인 멕시코 간 차이가 0.1 미만으로 국가간 편차가 거의 없음. 한국의 경우 건설분야 서비스무역제한지수는 0.136으로 OECD 평균보다 값이 작지만, 지수상으로 TPP 협상 참여국들과의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TPP 협상 참여 시 추가 개방에 대한 요구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유통서비스는 전체적인 개방수준이 다른 서비스 분야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음. 먼저 OECD 평균이 0.104로 서비스무역제한지수가 제시된 서비스 분야 중 가장 작은 값임. TPP 협상 참여국의 개방수준도 상당히 높아, 서비스무역제한지수 값이 가장 큰 국가는 캐나다(0.242)로 비교대상국가 중 유일하게 0.2를 넘기고 있음. 유통 분야 개방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는 한국으로, 이 분야 서비스무역제한지수가 0.058로 나타나 사실상 제한사항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금융서비스 전체 중 보험분야 서비스무역제한지수의 OECD 평균은 0.155이며, 한국과 호주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OECD 평균보다 큰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가장 낮은 개방수준을 보인 국가는 멕시코로 서비스무역제한지수가 0.226이며, 가장 높은 수준의 개방수준으로 보인 국가는 한국으로 0.075임. 한국의 보험 분야에 대한 무역관련 제한사항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 은행분야 서비스무역제한지수의 OECD 평균은 보험보다 조금 작은 0.147임. 일본,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가 OECD 평균보다 큰 값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호주, 한국은 이보다 작음. 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 통해 본 한국의 금융서비스 개방수준은 보험과 은행서비스 전반적으로 높은 편으로(특히 보험 분야), 한국이 TPP에 참여하더라도 추가적인 개방이 있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 운송서비스의 경우 해운이나 항공 서비스는 전통적으로 개방 수준이 낮은 분야이며, 특히 미국은 전통적으로 해운서비스 개방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옴. 항공서비스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매우 낮은 수준의 개방도를 보이고 있어 두 세부 분야 모두 TPP에서 추가적인 개방논의가 심도있게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그림 3. 주요국의 각 서비스 STRI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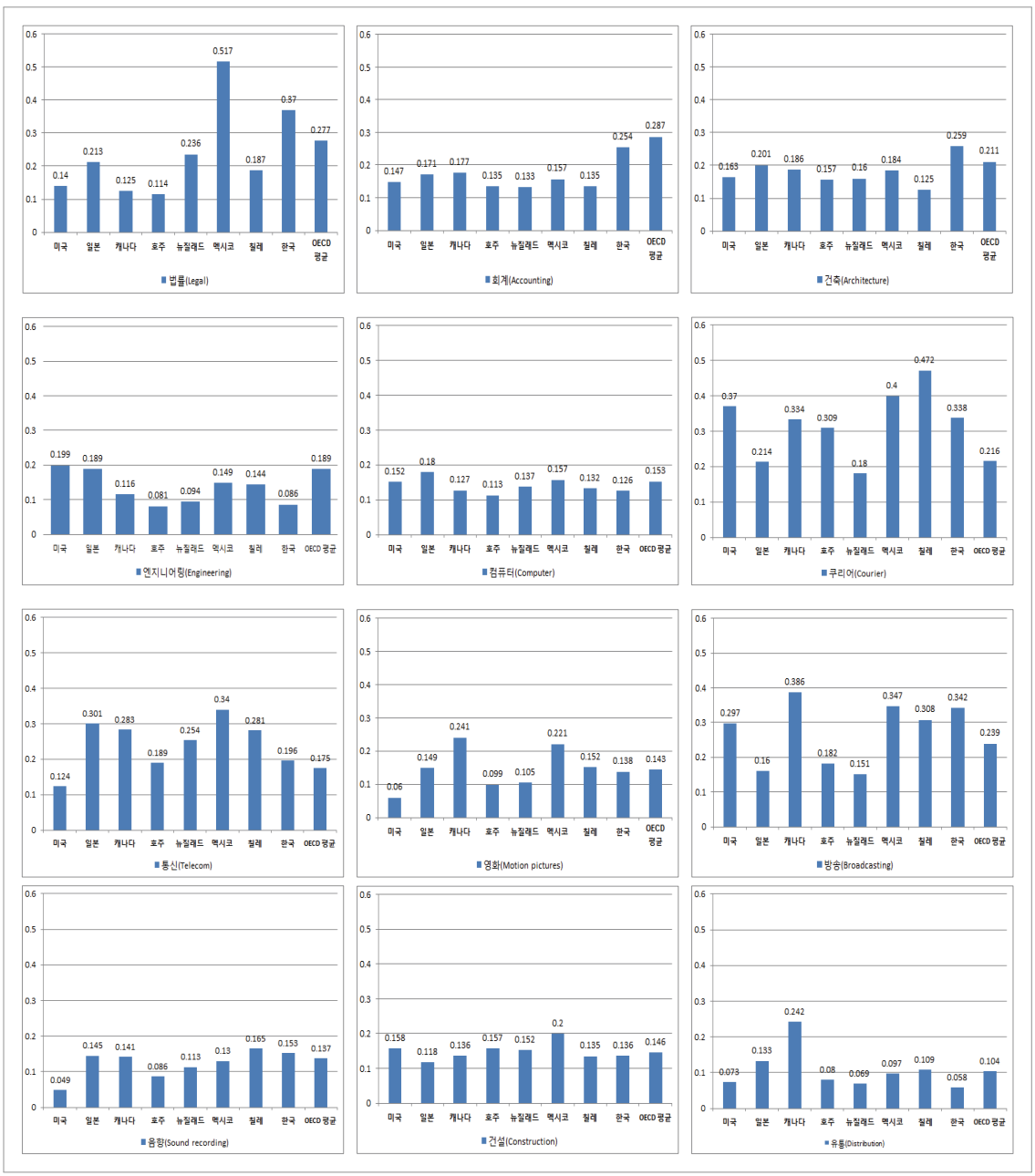

그림 3.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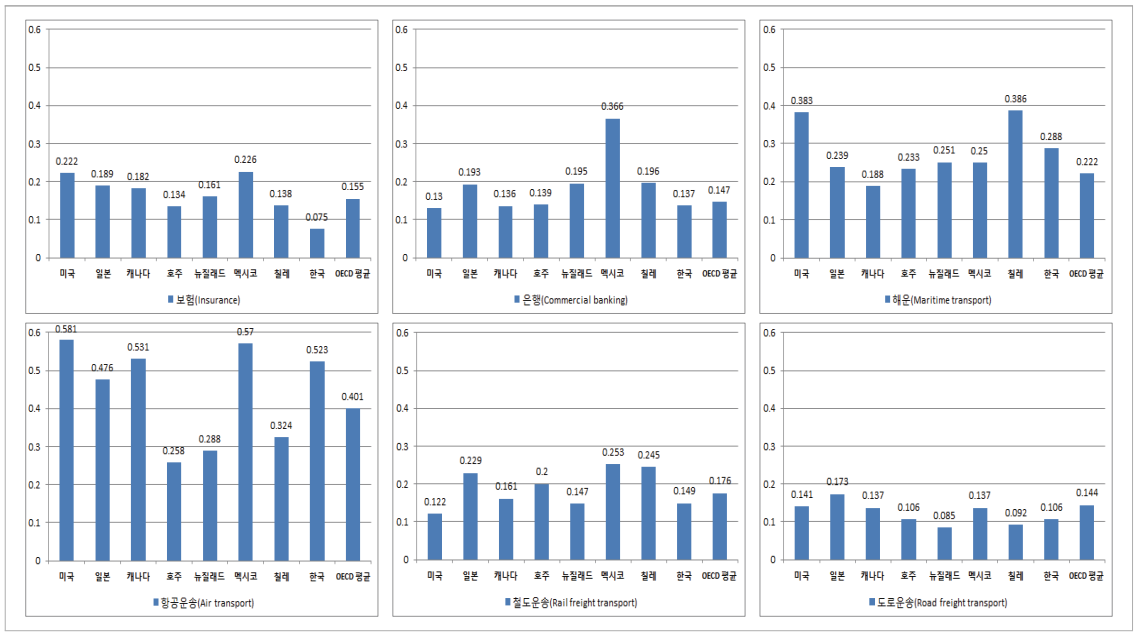

자료: OECD STRI Regulatory databas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정책 제언

가. GATS와의 차별적 요소 (재)점검

- 기본적으로 TPP는 한·미 FTA 등과 같은 NAFTA 방식을 따를 것이므로, NAFTA 방식의 협정과 GATS 방식 협정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대응방안 검토

1) 미래 MFN(forward MFN)

- 현재까지 한국은 미국과 가장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하였으므로 사실상 다른 국가와의 서비스 협정으로 인해 미국에 추가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는 효과는 없을 것으로 판단
- 다만 TPP에서 한·미 FTA 추가 요소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 진행에 따라 철저하게 검토해야 함.

2) 외국의 지역정부 차별조치

- GATS와 구별되는 다른 요소는 내국민대우 조항에서 지역정부의 차별적 조치임. 지역정부는 연방 제하에서의 주정부를 의미하는데, 특히 미국의 일부 주(州)가 내주민과 타주민을 차별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
- 하지만 현재 한국의 TPP 참여가능 시점을 점검하였을 때, 협상을 통해 지역정부의 차별적 조치에 대해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
- 다만 협상이 완전히 타결된 이후 참여하는 경우가 아닌 한 가능한 경우 최소한 지역정부의 비합치 조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기해볼 수 있을 것임.

3) 시장접근

- 협정상으로 시장접근은 GATS와 한 · 미 FTA에서의 규정이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나 TPP에서도 시장접근 조항 자체에는 급격한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

4) 현지주재

- GATS와 DDA에서는 현지주재 부과 의무금지 조항은 협정상에 명시적으로 나타난 의무는 아니나 양허상에 명시됨.
- NAFTA나 한 · 미 FTA에서는 대표사무소의 설립과 유지를 요구하는 것도 금지되는 것으로 규율의 구체화가 진행됨.
- 자연인에게 거주 이외에 주소를 두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현재 진행 중인 다른 협상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바, TPP 등 향후 협상에 도입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함.
- 국내적으로 현재 거주지와 주소지 요구조건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이유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향후 협상에서의 대응방안 구체화가 필요
- 일반적으로 협상에서 주소지 요구 금지와 같이 협정 내용에 대한 논의의 구체화가 있는 경우 국내적 이유를 근거로 논의 자체를 거부하기는 어려우므로, 국내법을 협정에 맞게 개정하거나 개정이 어려운 경우 예외조항 적용여부를 검토하고, 없는 경우 해당 협정 내에 이러한 예외조항 도입을 시도해야 할 것임.
- 현지주재의 경우 해외 서비스 공급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있는바,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협정 내용의 도입을 검토 가능
- 유보목록에 포함시키는 방법도 있으나 TPP는 포괄적양허 방식을 사용할 것이므로 이 경우 세밀한 국내 법령 검토가 필요

5) 이행요건

- 기본적으로 한국은 고용이나 기술이전 관련 이행요건이 없고, 이러한 이행요건은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는 거의 없으며 개발도상국 위주로 남아 있으므로, 한국의 경우 TPP 협상에서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
- 또한 한국은 개발도상국 진출을 통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참여가 활발하다는 점에서 이행요건 부과 금지의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

나. 서비스 분야별 한국의 대응방안

표 4. 국가별 GATS DDA 개방도 비교

서비스 업종	개방도 높음	개방도 낮음
사업	미국, 일본, 호주, **한국**	칠레, 말레이시아, 베트남
커뮤니케이션	미국, 뉴질랜드, **한국**	멕시코, 페루, 싱가포르
건설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페루
유통	미국, 호주, 베트남	칠레, 말레이시아
교육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칠레, 페루
환경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한국**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금융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멕시코, 칠레
보건 · 사회	호주, 멕시코, 싱가포르	캐나다, 뉴질랜드, 칠레, 페루, **한국**
관광	일본, 호주, 뉴질랜드, 칠레, **한국**	캐나다, 말레이시아, 베트남
오락 · 문화 · 스포츠	미국, 일본, 멕시코	캐나다, 뉴질랜드, 칠레, **한국**
운송	미국, 호주, **한국**	캐나다, 뉴질랜드, 칠레, 베트남

출처: 저자 작성.

- GATS DDA 이후 가장 높은 양허수준을 보인 한 · 미 FTA의 경우 우리나라는 현재유보 47건과 미래유보 44건을 포함
- 유보목록 개별 건수상으로는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보다 많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들 국가들이 제한조치를 두고 있는 일반적 조치, 사업서비스(전문직서비스 포함), 에너지, 통신 및 시청각서비스, 교육서비스, 의료 · 보건 · 사회서비스, 해상운송 · 항공운송 · 육상운송 등이 중심이 되고 있어 내용상의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아래에서는 GATS 이후 한 · 미 FTA에서 높은 개방이 이루어졌거나 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른 협정의 변화가 예상되는 전문직, 컴퓨터, 쿠리어, 통신, 시청각, 금융 여섯 가지 분야에서 이슈를 점검해보았음.

1) 전문직서비스

- 전문인력의 자격(qualification)과 면허(licensing)에 관한 제한사항이 많을 수밖에 없는 분야적 특성으로 인해 인력이동에 대한 제한사항이 많음.
- 인력이동 관련 조치는 한 국가의 노동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평적 조치로 다루고 있으며 민감한 이슈임.
- 한 · 미 FTA에서는 실질적으로 인력이동에 관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미국이 TPP에서 인력이동에 관해 적극적이지 않을 것을 암시하는 대목임.
- 자격의 상호 인정의 경우 일반적으로 서비스 협상에서 다루기 힘들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개방 논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우나, 전문직서비스의 경우 소비자 보호의 이슈가 있으므로 현지주재 요건 등의 방안을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

2) 컴퓨터 관련 서비스

- 컴퓨터 관련 서비스는 법률서비스나 회계서비스처럼 자격이나 면허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컴퓨터 관련 서비스는 전문직서비스와 유사하게 인력이동과 자격인정에 관한 문제로 귀결
- 한국은 이미 이 분야에 대해 GATS에서 높은 수준의 개방을 이루었으므로 추가개방의 여지는 매우 작음.
- 다만 장기 정책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한국인 전문가가 해외에 진출하거나 해외 전문가가 한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

3) 쿠리어서비스

- 사실 쿠리어서비스에 관한 대부분의 제한사항은 한국의 우체국 제도와 관련이 많음.
- TPP 협상에서는 CPC 코드에 분류되어 있지 않은 배달서비스 관련 논의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한 · 미 FTA에서는 특급배달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복수국간 서비스 협정(TiSA: Trade in Services Agreement)에서 특급배달을 포괄하는 경쟁적 배달서비스(competitive delivery service)에 관한 논의가 있음.
- 결국 논의의 핵심은 국내적으로 우체국의 보편적 서비스의 범위와 이에 대한 독점적 권리가 어디까지인가를 명확히 하는 일임.

4) 통신서비스

- 통신 분야의 경우 양허상의 개선보다는 전자상거래 협정과의 관계 등 규범의 개선을 통한 협정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
- 망 중립성, 정보의 이동, 설비의 국산화, 기술의 국적 제한 등 통상규범 논의가 변하는 데 대한 준비가 필요
- 단순히 통신 분야에 논의를 국한시키기보다는 정보와 통신 전체를 아우르는 규범논의가 있으므로, TPP에서 이러한 새로운 규범이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5) 시청각서비스

-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국 문화 보호를 이유로 외국인 자본 유입에 대한 제한이 많음.
- 시청각서비스 개방의 핵심은 방송서비스이며, 외국인 지분제한과 편성규제가 규제의 대부분임.
- 현재 한 · 미 FTA에서는 GATS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달성하였으며, 현재 시청각 분야에서 가장 교류가 많은 국가가 미국이라는 것과 한 · 미 FTA 이후 영화나 방송 분야에서 큰 논란이 없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한국이 다른 국가에 한 · 미 FTA 수준의 개방을 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아닐 것임.
- 다만 방송 분야에서도 통신 분야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형식의 방송이 가능해지고 있다는 점에는 전통적 방송서비스에 적용하던 조치를 얼마나 새로운 서비스에 적용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함.

6) 금융서비스

- 통상환경 측면에서 볼 때 2008년 후반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와 연이은 유럽 재정위기는 각국의 금융서비스 분야 개방에 대한 두려움도 동시에 확산시켰으며, 따라서 추가적인 개방에 대해서도 적극적이 않음.
- 다만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금융상품의 국경간 거래에 대한 논의가 활발
-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
- 금융 분야 논의의 핵심은 금융 분야 국경간 거래의 확대와 이에 따른 소비자 보호의 문제,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임.
- 또한 금융시장에 대한 건전성 조치(prudential measures)의 활용방안 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다. 개방수준에 걸맞은 국내제도의 정비 필요

- 결국 TPP 참여를 위하여 한국이 주의해야 할 것은 새로운 서비스 분야가 협정을 통해 양허 대상으로 확대되는 것과 새로 포함된 분야의 새로운 규범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입장정리이며, 동시에 국내 법률 및 제도 정비임.
  - TPP는 미국 주도의 협상이므로 미국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미국의 새로운 관심 분야가 통상 협상에서 논의될 것이므로, 정보통신이나 금융과 같이 미국이 큰 관심을 보이는 산업에 대한 협정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새로운 분야에 대해 한국이 협상에서 취할 수 있는 입장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
  - 이를 위해서 한국은 국내제도 정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본 보고서 결론에서 제시한 각 분야별 대응방안의 공통점임.
  - 협상에 있어 가장 곤란할 수 있는 경우는 한국이 특정 이슈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기 어려운 때이며, 이는 많은 경우 국내에서 관련 이슈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임.
  - 결국 협상의 결론에 임박하여 유보목록 작성을 통해 우리의 개방수준을 결정하는 것 외에는 TPP 협상에 대응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아, 협정의 내용이 한국의 법제도와 상충되거나 국내 법제도가 미비한 경우 적절히 유보하지 못하고 의도치 않은 높은 수준의 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주의
  - 결국 TPP 협상 참가를 위해 한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은 예상되는 개방분야에서의 국내제도를 충실히 정비해 두는 것임.